

# 붙임.

##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일정 변경)

### I 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위치 및 건축규모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566-3 번지 일원
- 공급개요 : 지하3층~지상28층 8개동 총 690세대 중 **일반분양 109세대**

#### ■ 공급개요

구분	주택형	공급세대수	세대당 공급면적(㎡)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일반분양	59	30	59.9044	18.6063	78.5107	
	59B	1	59.9044	18.6334	78.5378	배정 無
	84A	2	84.8908	26.5712	111.4620	배정 無
	84B	40	84.8978	24.3600	109.2578	
	84C	36	84.9102	24.1060	109.0162	
계		109				

#### ■ 예상분양가

- 현재 분양가 산정 증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 ■ 분양일정

구분	일자(예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2. 06. 03.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 06. 13.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인터넷 신청
당첨자발표(동호수발표)	2022. 06. 22.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계약체결	2022. 07. 04.-07. 06.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분양사무소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분양사무소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53, 1층(온천동)
- 전화번호 : 051-934-9888

## II

### 특별공급 자격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6. 03.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6. 03.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 III

###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가 특별공급 신청일(2022. 06. 13. 예정)에 인터넷(‘청약홈’ 홈페이지)을 통하여 반드시 청약 접수 하여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신청방법 및 신청 시 구비서류**

**■ 인터넷 청약 접수 원칙**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시간 09:00~17:30

**■ 분양사무소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만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

- 방문 접수시간 10:00~14:00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6. 03. 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발급기준	내용
필수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단, 대리인 위임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소 비치)
주택공급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 또는 날인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추가 제출)

- 신청자격

: 주택공급신청자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 자격입증서류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V

위치도 및 투시도

■ 위치도 \_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566-3번지 일원



■ 투시도



※ 상기 투시도는 인·허가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 : 사직지역주택조합 / 시공 : 코오롱글로벌(주)